
2023년도 OK FTA 컨설팅 사업수행기관(관세법인·사무소) 과업지시서

2023. 2.

**(재)충청남도경제진흥원
충남지역 FTA활용지원센터**

순 서

1. 과업 개요	1
2. 세부 컨설팅 유형	2
3. 사업수행절차 및 지원대상기업 선정	7
4. 과업 산출물	9
5. 기타 과업 수행 지침	12
참고. 2023년 OK FTA 컨설팅 양식	별첨

1

과업 개요

- (과업명) 2023년 OK FTA 컨설팅
- (과업기간) 2023년 3월 ~ 11월 30일
 - ※ 필요시 사전 협의를 통하여 계약 연장 가능하며, 계약기간 내에는 모든 컨설팅을 완료 및 컨설팅 산출물(결과보고서 등 보고서 및 증빙) 등록·제출 필수
- (과업목적) FTA 활용에 애로가 있는 수출(또는 국내공급)기업에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기업의 ①자율적인 원산지관리 능력 배양, ② FTA 활용 능력 제고, ③수출경쟁력 강화 달성
- (과업규모) 165백만원, 330MD(최소 종합 12개사, 기초 80개사)
 - ※ 업체 분담금 및 컨설팅 일수, 실계약 결과에 따라 지원MD 및 기업수 변동 가능
 - ※ 예산과 지원기업수를 고려하여 2개 수행기관 선정 및 수행기관별 82.5백만원, 165MD (최소 종합 6개사, 기초 40개사) 과업규모 배정 예정
- (지원대상) FTA활용하고자 하는 도내 중소·중견기업
 - ※ ‘중소기업기본법’ 제2조와 ‘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’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 해당 기업으로 대기업 기업집단 소속 기업 및 공기업 제외
 - ※ 직전 2년('21 ~ '22) FTA 컨설팅 수혜기업은 제외하나 컨설팅 품목 및 적용 협정 확인 결과 ①신제품 개발에 따라 HS코드 6단위 기준 품목 추가되는 경우, ②신시장 개척에 따라 미활용 FTA 협정(RCEP·이스라엘 등)에 대한 적용 분석 및 판정이 추가될 경우 허용
- (지원분야) FTA 활용 및 원산지관리에 필요한 맞춤형 컨설팅
 - FTA협약 상대국에 수출중이거나 수출하려는 기업의 원산지관리, 원산지 증명서 발급 및 원산지 인증수출자 인증 취득 등 지원

<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 유형 >

유형		컨설팅 내용	지원MD
종합	A	종합 컨설팅 (품목수 4개 + 추가 2개)	6~10일 (필수 6+선택 4일)
기초	B	수출기업 원산지증명서 컨설팅 (품목수 2개 + 추가 1개)	2~5일 (필수2일+선택3일)
	C	협력기업 원산지확인서 컨설팅 (품목수 2개 + 추가 1개)	2~5일 (필수2일+선택3일)

□ FTA활용 목적에 따른 유형별 컨설팅 제공

- (지원 대상) FTA활용목적에 따라 수출기업과 수출협력기업, 원부자재 공급 기업으로 세분화된 컨설팅으로 FTA활용 능력을 제고
 - (국내 수출기업 지원) 최종 조립, 완제품을 매입하여 수출하는 기업으로 해외 수입기업에게 원산지증명서 발급 및 품목·업체별 인증 수출자 취득, 원산지사후 검증 대비 필요
 - (수출협력 기업) 완제품·부분품·핵심부품 제조기업으로 수출기업의 원산지판정을 위한 원산지확인서 발급, 소명서 작성, 품목별 인증 수출자 취득 필요
 - (원부자재 공급기업) 원자재·부자재 등 비교적 단순한 품목이나, 원산지판정을 위해 필요한 품목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원산지확인서 발급 및 소명서 작성 필요

<OK FTA컨설팅 지원 대상>



□ **종합 컨설팅(유형 A, 최대 10MD)**

- (상세 프로그램) 기업의 자체 FTA활용 역량강화를 위한 필수 컨설팅 (6MD)과 기업선택형 컨설팅(최대 4MD)을 종합적으로 제공
- 필수 컨설팅을 통하여 품목분류, 원산지판정, 원산지증명(확인)서 발급 준비 등 전문 컨설팅과 기업의 원산지관리 교육을 병행
- 선택형 컨설팅으로 추가 품목 지원, 인증수출자(업체·품목) 취득, 원산지 사후검증 모의 대응 등을 제공

<종합 컨설팅 상세 프로그램>

구분	컨설팅 항목	주요 컨설팅 내용	예정일수
· 필수컨설팅 (6MD)	- 기업진단	· 주요 생산품목 확인 · 주요 수출국가, 수출금액 확인 · 수출 전문성 및 원산지관리 실태 확인	· 0.5MD
	- 품목분류	· 수출제품의 품목분류(HS 6단위, 4개)	· 1.5MD
	- FTA관세 절감 실익 확인	· 발효 협정 주요국/수출예정국가 기준 관세 절감 실익 확인(MFN, WTO, FTA특례세율)	· 0.5MD
	- FTA 원산지결정기준 확인	· 관세절감의 실익 존재하는 협정, 품목에 대한 원산지결정기준 확인	· 0.5MD
	- 원산지 판정	· 협정·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른 판정 시행 · 원산지 판정 과정 상세 제시 ·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을 위한 대안 제시 · 핵심 원산지관리 부품 전략 제시	· 1.0MD
	- 원산지 증명 발급 교육 (FTA활용능력 강화) - 원산지관리시스템 사용 지원	· FTA협정, FTA특례법 등 활용 개념 스터디 · 원산지관리 전담자 및 서명권자 관리 · 원산지증명(확인)서, 소명서 작성 사례 연습 · 원산지 판정 및 시스템 활용 교육 · 자율발급 및 기관발급 사례 연습	· 1.0MD
	- 기업별 FTA활용 매뉴얼 제작	· 기업진단~원산지증명발급 산출물을 토대로 기업의 FTA활용을 위한 전용 매뉴얼 제작	· 1.0MD
· 기업선택형 컨설팅 (4MD)	- 품목 추가 컨설팅	· 품목수(HS6단위) 증가時 품목당 1MD 추가 · 컨설팅 합계 부품수 100개 초과시 1MD 추가	· 2.0MD (택1)
	- 품목분류 사전심사	·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활용(1MD)	· 1.0MD
	- 업체(품목)별 인증수출자 취득 지원	· 업체별(2MD)·품목별(1MD) 인증수출자 취득을 위한 관련 서류 작성 및 검토	· 1.0MD ~2.0MD
	- 원산지 사후검증 모의 대응	· 원산지증명서 발행 기준 모의 검증 수행 · 취약점 점검 리포트 작성 및 대안 제시	· 1.0MD

- ① 품목수 : 품목수는 HS 6단위를 기준으로 4개 품목에 대한 과업 수행하되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컨설팅 수행계획서를 승인 예정
 - 1) HS 6단위가 다른 제품이 추가되는 경우 추가 수행일수 인정(최대 2MD)
 - 2) 컨설팅 전체 제품의 부품수의 합계가 100개 초과시 추가 수행일수 적용(1MD)
 - 3) 1), 2)는 중복 적용이 불가하며 1), 2) 中 택 1
- ② FTA실익 : MFN·WTO 등 실행관세율과 관세철폐 스케줄('23~'26)을 고려 판정
 - HS6단위, 협정, 국가별로 MFN, WTO, FTA특혜관세(4개년)을 비교
 - 실행관세율이 Free인 경우도 보고서에는 표기, 실익은 없는 것으로 판정
- ③ 원산지결정기준 : FTA실익이 존재하는 협정, 국가의 원산지결정기준 분석
- ④ 원산지판정 : BOM을 토대로 판정하되, 복수·결합 원산지결정기준일 경우, 해당 사항을 모두 판정하고 원산지판정 과정을 상세히 기술바람
- ⑤ 원산지증명 발급 : 자율·기관발급 모두에 대응 가능하도록 교육 및 발급 지원 서명권자 지정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컨설팅 수행
- ⑥ 원산지관리시스템 교육 : FTA Korea/Pass 등 웹기반 원산지관리시스템의 가입, 활용 방법 및 기초 데이터(엑셀) 셋팅 및 발급 교육
- ⑦ 기업별 FTA활용 매뉴얼 제작 : 공통매뉴얼과 특화매뉴얼로 구분하되, 특화매뉴얼은 기업의 원산지관리 담당자가 교체되는 경우에도 연속성을 지니고 해당 기업의 원산지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성
- ⑧ 품목추가 : 추가된 품목에 대해서는 ②~⑦과정을 모두 수행하여야 함
- ⑨ 품목분류 사전심사 지원 : 품목분류 사전심사에 필요한 신청서, 물품설명서 작성 업무 전반 지원,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 대응 수행
- ⑩ 인증수출자 취득 지원 : 원산지 인증 수출자 인증에 필요한 서류 구비 등 업무 전반 지원, 필요한 경우 세관 대응 수행
 품목별 인증은 1MD를 추가, 업체별 인증은 2MD 추가
- ⑪ 원산지 사후검증 모의 대응 : 실제 수출 사례 및 원산지증명 발급 건에 대한 모의 검증을 수행하고 체크리스트 제공
- ⑫ 해외인증·지식재산권 컨설팅 : 비관세장벽 컨설팅 사업과 연계하여 제공, 사업수행 기관(관세법인)과 별도 수행
- ⑬ 원산지증명 발급 교육의 수행 : FTA협정·FTA관세법 등 활용개념 스터디는 기업진단, 품목분류 방문 컨설팅 수행시 함께 수행 가능

□ 기초 컨설팅(유형 B·C, 최대 5MD 지원)

○ (특징) 원산지증명(확인)의 긴급한 발급이 필요한 지역 중소기업 밀착형 기초 컨설팅 제공 및 품목별 인증수출자 지원

- (유형B·C) 수입자의 요청에 따른 원산지증명서 발급 지원 및 수출 협력기업의 원산지확인서 발급 지원

※ 기존 품목별 인증수출자 취득 유형 폐지, B·C유형의 선택 프로그램을 통하여 품목별 인증 수출자를 취득할 수 있도록 개선

< 기초 컨설팅 상세 프로그램 >

구분	컨설팅 항목	주요 컨설팅 내용	예정일수
·[유형B] 수출기업 원산지증명 컨설팅 (2~5MD)	- 기업진단 및 품목분류	· 주요 생산품목 확인 · 주요 수출국가, 수출금액 확인 · 주력 수출제품의 품목분류(HS 6단위, 2개)	•0.5MD
	- FTA관세 절감 실익 및 원산지결정기준 확인	· 발효 협정 주요국/수출예정국가 기준 관세 절감 실익 확인(MFN, WTO, FTA특례세율) · 원산지결정기준 확인	•0.5MD
	- 원산지 판정	· 협정·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른 판정 시행 · 원산지 판정 과정 상세 제시 ·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을 위한 대안 제시 · 핵심 원산지관리 부품 전략 제시	•0.5MD
	- 원산지 증명 발급 교육 (FTA활용능력 강화)	· 원산지관리 전담자 및 서명권자 관리 · 원산지증명서 작성 사례 연습 · 원산지소명서 작성 사례 연습 · 자율발급 및 기관발급 사례 연습	•0.5MD
	- 선택형 컨설팅	· 품목수(HS6단위) 증가時 품목당 1MD 추가 ·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활용(1MD) · 품목별 인증수출자 취득 지원(1MD) · 원산지 사후검증 모의 대응(1MD)	•3.0MD (최대)
·[유형C] 협력기업 원산지확인 컨설팅 (2~5MD)	- 기업진단 및 품목분류	· 제품 공급기업의 주요 수출국 및 활용 협정 · 주력 제품의 품목분류(HS 6단위, 2개)	•0.5MD
	- 원산지결정기준 확인	· 원산지결정기준 확인	•0.5MD
	- 원산지 판정	· 협정·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 따른 판정 시행 · 원산지 판정 과정 상세 제시 · 원산지결정기준 충족을 위한 대안 제시 · 핵심 원산지관리 부품 전략 제시	•0.5MD
	- 원산지 증명 발급 교육 (FTA활용능력 강화)	· 원산지관리 전담자 및 서명권자 관리 · 원산지확인서 작성 사례 연습 · 원산지소명서 작성 사례 연습	•0.5MD
	- 선택형 컨설팅	· 품목수(HS6단위) 증가時 품목당 1MD 추가 ·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활용(1MD) · 품목별 인증수출자 취득 지원(1MD)	•3.0MD (최대)

[유형B·C 공통]

- ① 품목수 : 품목수는 HS 6단위를 기준으로 2개 품목에 대한 과업 수행하되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컨설팅 수행계획서를 승인 예정
HS 6단위가 다른 제품이 추가되는 경우 추가 수행일수 인정(최대 1MD)
- ② FTA실익 : MFN·WTO 등 실행관세율과 관세철폐 스케줄('23~'26)을 고려 판정
→ HS6단위, 협정, 국가별로 MFN, WTO, FTA특혜관세(4개년)을 비교
→ 실행관세율이 Free인 경우도 보고서에는 표기 실익은 없는 것으로 판정
- ③ 품목분류 사전심사 지원 : 품목분류 사전심사에 필요한 신청서, 물품설명서 작성업무 전반 지원, 필요한 경우 해당기관 대응 수행
- ④ 인증수출자 취득 지원 : 원산지 인증 수출자 인증에 필요한 서류 구비 등 업무 전반 지원, 필요한 경우 세관 대응 수행
품목별 인증은 IMD를 추가
- ⑤ 원산지증명/확인서 발급 교육의 수행 : FTA협정·FTA관세법 등 활용개념 스터디는 기업진단, 품목분류 방문 컨설팅 수행시 함께 수행 가능

[유형B]

- ⑥ 원산지결정기준 : FTA실익이 존재하는 협정, 국가의 원산지결정기준 분석
- ⑦ 원산지판정 : BOM을 토대로 판정하되, 복수·결합 원산지결정기준일 경우 해당 사항을 모두 판정하고 원산지판정 과정을 상세히 기술바람
- ⑧ 원산지증명 발급 : 자율·기관발급 모두에 대응 가능하도록 교육 및 발급 지원 서명권자 지정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컨설팅 수행
- ⑨ 품목추가 : 추가된 품목에 대해서는 ②~⑧과정을 모두 수행하여야 함
- ⑩ 원산지 사후검증 모의 대응 : 실제 수출 사례 및 원산지증명 발급 건에 대한 모의 검증을 수행하고 체크리스트 제공

[유형C]

- ⑥ 원산지결정기준 : 발효 전협정, 국가의 원산지결정기준 분석
- ⑦ 원산지판정 : BOM을 토대로 판정하되, 복수·결합 원산지결정기준일 경우 해당 사항을 모두 판정하고 원산지판정 과정을 상세히 기술바람
- ⑧ 원산지확인서 발급 : 원산지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도록 교육 및 발급 지원 서명권자 지정 및 원산지증명서 발급 컨설팅 수행
- ⑨ 품목추가 : 추가된 품목에 대해서는 ②~⑧과정을 모두 수행하여야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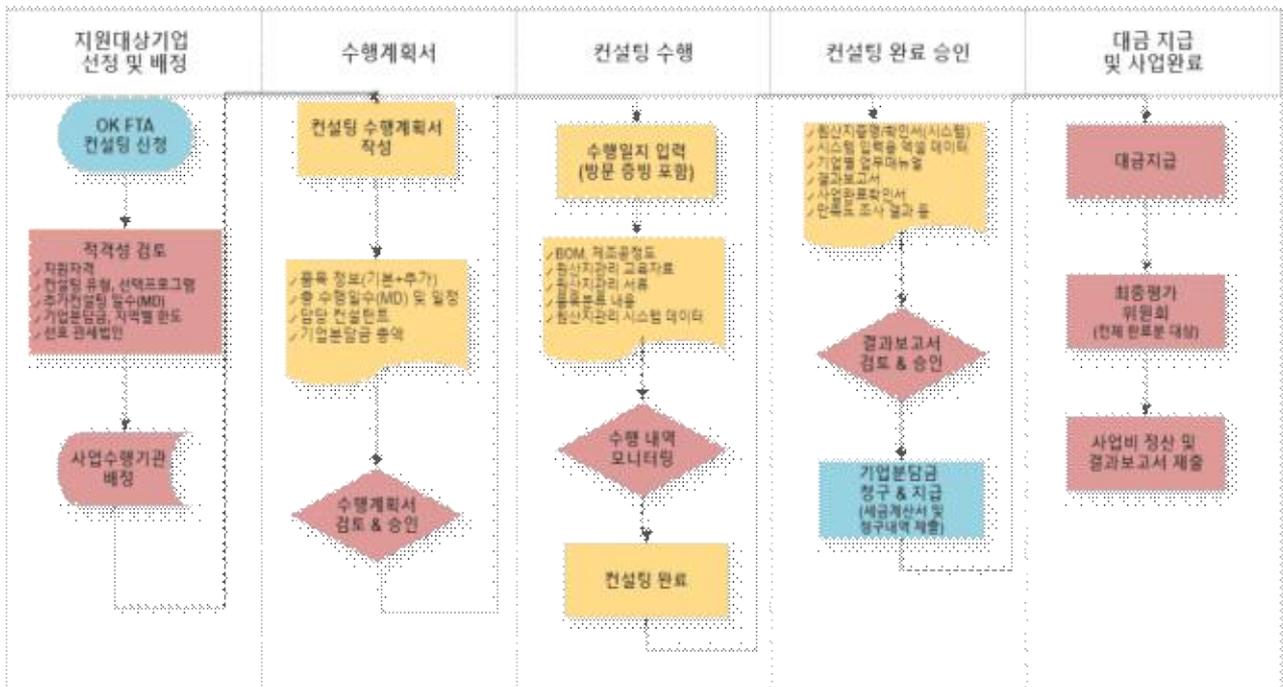
3

사업수행절차 및 지원대상기업 선정

□ 사업 진행절차

- (지원대상기업 모집) 2023년 3월 ~ 11월(예산소진시 조기마감), OK FTA 홈페이지 및 이메일을 통한 접수 시행
- (적격성 검토) 충남FTA활용지원센터가 지원대상 여부, 직전년도매출, 기업분담비율, 컨설팅 유형 및 선택 프로그램 등을 확인
- (관세법인 배정) 지원대상기업의 선택에 따라 관세법인·사무소 배정
- (수행계획서 검토 및 승인) 사업수행기관이 제출한 수행계획서의 검토 및 승인, 승인 후 컨설팅 착수
- (컨설팅 결과보고서 검토 및 승인) 수행일지, 결과보고서를 전수 검사하여 보완 사항 통보 및 승인 여부 판정
- (대금지급 등 사업정산) 대금 지급 및 최종평가 위원회 개최

<OK FTA 컨설팅 사업 진행 절차>



□ 지원대상기업 신청방법 및 자격

- (신청방법) FTA통합플랫폼(okfta.kita.net)에서 온라인 신청을 기본으로 하되, 시스템 불안정성을 고려하여 이메일 접수도 가능

<사업신청 제출서류>

신청	▶ 참가신청서 1부	
필수	① 사업진행 동의서 1부	② 정보제공 동의서 1부
제출	③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	④ 직전년도 매출실적 증빙서류 1부
서류	※ 매출실적 증빙서류 : 표준재무제표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(⇒ 국세청 홈택스 발급본만 인정 / 기장대리 세무사 확인본 불가)	

- (신청자격 및 업체 분담금)

구분	세부내용
신청자격	1) 중소·중견기업(공정위 공고 대규모 기업집단 및 공기업 제외) 2) 2년 내('21~'22) FTA 컨설팅 수혜기업 제외(타부처 유사사업 포함) ※ 컨설팅 품목 및 적용 협정 확인 결과 ① 신제품 개발에 따라 HS코드 6단위 기준 품목 추가되는 경우, ② 신시장 개척에 따라 미활용 FTA 협정(RCEP·이스라엘 등)에 대한 적용 분석 및 판정이 추가될 경우 허용
기업 분담금	컨설팅 총액 200만원 이상시 전년도('22) 매출액 기준으로 차등 분담 : ① 50억원 이하 : 기업분담금 없음 ② 50억원~100억원 미만 : (컨설팅 총액-200만원)의 10% ③ 100억원~500억원 미만 : (컨설팅 총액-200만원)의 20% ④ 500억원~1,000억원 미만 : (컨설팅 총액-200만원)의 30% ⑤ 1,000~1,500억원 미만 : (컨설팅 총액-200만원)의 40% ⑥ 1,500억원 이상 : (컨설팅 총액-200만원)의 50% ※ 기업분담금은 컨설팅 총액 기준으로 200만원을 차감한 금액에 매출액별 비율을 곱한 금액 예시)컨설팅총액 250만원, 부담률 10%일 경우 5만원으로 계산

□ 지원대상기업 선정 및 배정

- 총 지원금액 한도내에서 적격업체 선착순(접수기준)으로 선정
- 사업수행기관(관세법인), 충남FTA활용지원센터를 통한 투 트랙으로 접근하여 수혜업체 발굴

4

과업 산출물

□ 정기 사업보고

- (월간보고서) 사업수행 현황을 차월 두 번째 영업일까지 제출
- (정산보고서) 6·9·11월 말 대금 지급을 위한 정산보고서 제출
- (사업결과보고서) 계약종료일까지 제출

□ 컨설팅 착수 시 과업 : 수행계획서 작성 및 사업관리시스템 업로드

- 사업관리시스템에 책임 컨설턴트명(연락처 등 포함), 컨설팅 총수행 일수, 수행기간, 수행일정, 품목정보, 컨설팅 유형, 선택 프로그램 유형, 기업분담금 등을 포함한 수행 계획서 제출
- 수행계획서 업체 배정일 다음날로부터 5영업일 이내 파일 형태로 사업 관리시스템에 업로드 할 것
- 수행계획서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컨설팅 착수 가능

□ 컨설팅 수행 및 완료보고서 과업 : 산출물 사업관리시스템 업로드

- (A 유형) 종합컨설팅

유형	번호	구분	내용
A	(1)	수행일지 관련 산출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컨설팅대상 품목 품목분류 의견서 - 원산지판정서류 일체(BOM, 제조공정도, 원산지확인서 등) - (해당하는 경우) 인증수출자 신청시 세관에 제출한 서류 일체 - (해당하는 경우)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류 일체 - (해당하는 경우) 모의검증관련 자료 일체 * 상기 산출물은 해당 업무를 수행한 MD에 제출 ** 상기 언급한 산출물 이외에 컨설팅 수행에 따라 발생한 결과물은 수행일지 또는 기업특화 매뉴얼에 반영
	(2)	완료보고 관련 산출물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완료보고서 뒷편에 BOM, 제조공정도, 원가산출내역서 반드시 별첨하여 제출 - 기업특화 매뉴얼 제출시 공통매뉴얼도 함께 압축 파일로 제출 - 사업완료확인서 및 업체만족도 조사는 함께 압출 파일로 제출 - 아래 시스템상 '결과등록화면' 참고하여 서류 제출

유형	번호	구분	내용	
A	(3)	시스템상 [결과등록 화면]	완료보고서	[붙임8] OK FTA 컨설팅 결과보고서[A유형] * 완료보고서 뒷편에 BOM, 제조공정도, 원가산출내역서 반드시 별첨하여 제출
			원산지증명/확인서 (모의발급)	원산지증명서
			원산지소명서	원산지소명서
			원산지관리시스템 데이터	원산지관리시스템 데이터
			기업특화매뉴얼	기업특화매뉴얼+공통매뉴얼 함께 제출
			인증수출자 인증서	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서
			기업담당자(방문)확인서	[붙임12] FTA 컨설팅 사업완료 확인서
			기타(산출물)	(해당하는 경우) 품목분류사전심사 결정문 등

○ (B 유형) 수출기업 원산지증명서 컨설팅

유형	번호	구분	내용	
B	(1)	수행일지 관련 산출물	- 컨설팅대상품목 품목분류 의견서 - 원산지판정서류 일체(BOM, 제조공정도, 원산지확인서 등) - (해당하는 경우)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류 일체 * 상기 산출물은 해당 업무를 수행한 MD에 제출 ** 상기 언급한 산출물 이외에 컨설팅 수행에 따라 발생한 결과물은 수행일지에 반영	
		완료보고 관련 산출물	- 완료보고서 뒷편에 BOM, 제조공정도, 원가산출내역서 반드시 별첨하여 제출 - 공통매뉴얼은 기업특화매뉴얼 부문에 제출 - 사업완료확인서 및 업체만족도 조사는 함께 압출 파일로 제출 - 아래 시스템상 '결과등록화면' 참고하여 서류 제출	
	(3)	시스템상 [결과등록 화면]	완료보고서	[붙임9] OK FTA 컨설팅 결과보고서[B유형] * 완료보고서 뒷편에 BOM, 제조공정도, 원가산출내역서 반드시 별첨하여 제출
			원산지증명/확인서 (모의발급)	원산지증명서
			원산지소명서	원산지소명서
			원산지관리시스템 데이터	-
			기업특화매뉴얼	공통매뉴얼
			인증수출자 인증서	-
			기업담당자(방문)확인서	[붙임12] FTA 컨설팅 사업완료 확인서
기타(산출물)	(해당하는 경우) 품목분류사전심사 결정문 등			

○ (C 유형) 협력기업 원산지확인서 컨설팅

유형	번호	구분	내용															
C	(1)	수행일지 관련 산출물	- 컨설팅대상품목 품목분류 의견서 - 원산지판정서류 일체(BOM, 제조공정도, 원산지확인서 등) - (해당하는 경우) 품목분류 사전심사 신청서류 일체 - 사업완료확인서 및 업체만족도 조사는 함께 압출 파일로 제출 * 상기 산출물은 해당 업무를 수행한 MD에 제출 ** 상기 언급한 산출물 이외에 컨설팅 수행에 따라 발생한 결과물은 수행일지에 반영															
	(2)	완료보고 관련 산출물	- 완료보고서 뒷편에 BOM, 제조공정도, 원가산출내역서 반드시 별첨하여 제출 - 공통매뉴얼은 기업특화매뉴얼 부문에 제출															
	(3)	시스템상 [결과등록 화면]	<table border="1"> <tr> <td>완료보고서</td> <td>[붙임10] OK FTA 컨설팅 결과보고서[C유형] * 완료보고서 뒷편에 BOM, 제조공정도, 원가산출내역서 반드시 별첨하여 제출</td> </tr> <tr> <td>원산지증명/확인서 (모의발급)</td> <td>원산지확인서</td> </tr> <tr> <td>원산지소명서</td> <td>원산지소명서</td> </tr> <tr> <td>원산지관리시스템 데이터</td> <td>-</td> </tr> <tr> <td>기업특화매뉴얼</td> <td>공통매뉴얼</td> </tr> <tr> <td>인증수출자 인증서</td> <td>-</td> </tr> <tr> <td>기업담당자(방문)확인서</td> <td>[붙임12] FTA 컨설팅 사업완료 확인서</td> </tr> <tr> <td>기타(산출물)</td> <td>(해당하는 경우) 품목분류사전심사 결정문 등</td> </tr> </table>	완료보고서	[붙임10] OK FTA 컨설팅 결과보고서[C유형] * 완료보고서 뒷편에 BOM, 제조공정도, 원가산출내역서 반드시 별첨하여 제출	원산지증명/확인서 (모의발급)	원산지확인서	원산지소명서	원산지소명서	원산지관리시스템 데이터	-	기업특화매뉴얼	공통매뉴얼	인증수출자 인증서	-	기업담당자(방문)확인서	[붙임12] FTA 컨설팅 사업완료 확인서	기타(산출물)
완료보고서	[붙임10] OK FTA 컨설팅 결과보고서[C유형] * 완료보고서 뒷편에 BOM, 제조공정도, 원가산출내역서 반드시 별첨하여 제출																	
원산지증명/확인서 (모의발급)	원산지확인서																	
원산지소명서	원산지소명서																	
원산지관리시스템 데이터	-																	
기업특화매뉴얼	공통매뉴얼																	
인증수출자 인증서	-																	
기업담당자(방문)확인서	[붙임12] FTA 컨설팅 사업완료 확인서																	
기타(산출물)	(해당하는 경우) 품목분류사전심사 결정문 등																	

□ 유형별 필수 현장 방문 컨설팅

- 컨설팅 세부 유형에서 유형별/항목별 필수 방문 컨설팅 항목을 지정 하였으며, 향후 업무수행 지침서를 통해 상세화
- 필수 현장 방문 컨설팅시 입증 서류를 반드시 제출

□ 기업분담금 적용기준 : 직전년도 매출액 기준 0~50% 차등 적용

- 직전 회계연도('22) 매출액 기준
- 기업분담금이 부담이 발생할 경우 사업수행기관(관세법인)을 공급하는 자로, 지원대상을 공급받는 자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금 수취

<매출액별 기업분담금 현황표>

직전년도 매출액	기업분담금
50억원 이하	없음
50억원 ~ 100억원 미만	컨설팅 총액의 10%
100억원 ~ 500억원 미만	컨설팅 총액의 20%
500억원 ~ 1,000억원 미만	컨설팅 총액의 30%
1,000억원 ~ 1,500억원 미만	컨설팅 총액의 40%
1,500억원 이상	컨설팅 총액의 50%

□ 사업 관리방안

○ 사업수행기관 관리

- 사업수행기관은 컨설팅 수행 세부계획*을 수립하여 컨설팅 운영기관에 제출하고 수시로 추진일정에 대한 정보를 공유
- * 컨설팅 추진 현황(배정기업수, 기업별 진행 상황), 컨설턴트별 향후 추진계획 등
- 체계적인 컨설팅 수행을 위한 FTA 컨설턴트 업무지침 배포 및 PM 회의 및 정기 사업보고를 통한 수시 점검 및 현장점검 시행
- 사업수행기관은 기업별 컨설팅 수행 계획을 작성하여 운영기관에 제출, 승인된 수행계획에 따라 정해진 기한 내에 과업 수행
- 최종 완료보고서는 운영기관·산업부 등이 상시 열람이 가능한 전주기 플랫폼을 통해 제출

○ 컨설팅 수행 과정 관리

- (적격성 진단) 지원대상기업에 대한 컨설팅 착수에 앞서 제출서류 검토 및 전화 상담(방문) 등을 통해 적격성 사전진단 실시
- (컨설팅수행계획 공유) 지원기업이 컨설턴트의 업무 수행 계획, 총 수행MD, 현장방문 횟수, 최종 산출물의 형태, 총지원금액 및 기업의 자부담금액 등을 인지할 수 있도록 지원기업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별도 송부

○ 컨설팅 성과 및 평가관리

- (사후관리 실시) 컨설팅 진행 중 또는 결과보고서 제출 후 사실여부 확인 및 기업 애로 청취를 위한 모니터링 실시 및 만족도 조사
- (최종평가 개최) 운영기관은 컨설팅 결과보고서, 현장 모니터링 및 만족도 조사를 바탕으로 평가기준에 따라 1차 평가(정량)후 완료 점검을 위해 최종평가 위원회(정성평가) 개최
- (상시점검) 전주기플랫폼 상 수행일지 내용 등을 검토·확인, 수정·보완이 필요할 경우 기간을 정하여 컨설턴트에게 수정·요구

□ 기타 유의 사항

- 사업수행기관은 본 사업의 재원인 국고보조금의 공정한 집행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며, 컨설팅 수행일수를 엄수하고, 불필요한 컨설팅으로 국고보조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신의성실을 다해야 함
- 사업수행기관은 동 과업이 수출기업 및 수출협력 기업의 FTA 활용 능력 향상 및 지원이 목적임을 명심하여, 지원대상기업과의 긴밀한 협조 하에 사업성과를 최대한 높일 수 있도록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

- 지원대상기업은 2023년 OK FTA 컨설팅 중 복수 유형을 동시에 신청할 수 없으며, 사업수행기관은 본 사업의 컨설팅 유형/선택 프로그램을 통해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여야 함
- 본 과업은 과업지시서 및 업무수행 지침에서 정한 바에 의하여 수행. 단, 과업지시서 및 업무수행 지침의 내용이 분명치 않거나 내용상 모순점이 있을 경우에는 충남FTA활용지원센터의 해석을 따름
- 충남FTA활용지원센터는 사업수행기관의 투입인력이 과업수행 상 부적합 또는 자격미달이라고 판단될 경우 즉각적인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, 사업수행기관은 이에 즉각 응하여야 함
- 투입 담당자 퇴사 등 사업수행기관의 사정에 의하여 최초승인을 받아 투입한 인력을 교체 할 경우에는 대체 인력에 대하여 충남FTA활용지원센터의 승인을 득한 후에 대체하여야 함
- 본 과업결과에 따른 모든 산출물과 관련 자료들은 충남FTA활용지원센터의 사전승인 없이 복사 또는 타 기관 제공을 금함

[붙임] 2023년 OK FTA 컨설팅 양식 1부. 끝.